

# 대학의 원격 수업을 위한 저작권 안내사항

스마트교수학습지원센터



## [1] 대학의 원격 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용 사례

## [2] 대학의 원격 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용 조건

1. 원격 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용 시 공통으로 지켜야할 조건
2. 교육의 목적이라도 저작물의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 사례

## [3] FAQ (자주 묻는 질문)

1. 원격 수업 중 지문, 사진, 동영상, 논문 등의 저작물 이용과 송출이 가능한가요?
2. 학교의 학습관리시스템(LMS), 온라인 카페에 저작물을 게시해도 되나요?
3. 원격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논문/책을 스캔한 파일을 제공해도 되나요?
4. 구매한 상업용 음원, 영상저작물이라면 학생들에게 전체를 제공해도 되나요?
5. 인터넷에서 공유되는 무료 폰트를 학습 자료에 사용해도 될까요?
6. 학생들의 과제물을 학교 수업이 아닌 외부 강의에 공개할 수 있나요?
7. 사진, 음원 등의 저작물을 학습 자료(PPT 등)의 배경에 이용해도 되나요?

# **[1] 대학의 원격 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용 사례**

# [1] 대학의 원격 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용 사례



저작물 이용 사례	가능 여부	비고
1. 원격 수업에서 지문, 사진, 동영상 등의 저작물 이용과 송출	사전 동의 없이 일부 이용가능	
2. 수업 카페, LMS 강의 페이지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저작물 게시	사전 동의 없이 일부 이용가능	
3. 논문 또는 책 저작물의 복제와 배포	사전 동의 없이 일부 이용가능	외부인 접근 제한 조치 필요
4. 교수가 직접 구매한 음원, 영상저작물	사전 동의 없이 일부 이용가능	저작물 출처 개별 표시 필수
5. 학습 자료에 폰트 사용	개별 이용조건 확인 바람	
6. 원격 수업 학습자의 과제물 공개	저작권자(학생)의 동의 필요	
7. 학습 자료 제작 시 배경을 위한 저작물 사용, 수업 집중을 위한 음원 사용	저작권자의 동의 필요 (또는 개별 이용조건 확인 바람)	해당 사례의 저작물은 교육 목적이 아니므로 동의 필요

※ 위 사례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내에서의 기준으로, 저작물의 실제 이용 방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 35조 :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일부 이용할 수 있다.)

## **[2] 대학의 원격 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용 조건**

## [2] 대학의 원격 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용 조건



### 1. 원격 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용 시 공통으로 지켜야할 조건

#### > 교육 목적의 이용

교사는 교육의 목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분을 학생에게 오프라인으로 배포하거나 인터넷에 탑재하여 온라인으로 제공 또는 전송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저작물이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만**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일부 사용 가능합니다.

#### > 저작물 보호 조치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해당 교과목의 교사와 학생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가 요구됩니다.

#### > 저작물 이용 분량

텍스트 저작물의 경우 10%, 음원 형태의 저작물의 경우 20%(최대 5분 이내), 영상 저작물의 경우 20%(최대 15분 이내) 까지 **일부 이용** 가능합니다. (단, 교사가 **직접 구매한 저작물일 경우에 한해 전체 재생/송출 가능, 전체 배포/공유는 불가**)

#### > 저작물 출처 표시

저작물 이용 시 저작자 명, 발행 연도 등의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저작물과 가까운 위치에 **개별 표기**하여야 합니다.



### 2. 교육의 목적이더라도 저작물의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 사례

#### > 저작물의 무단 배포

저작물의 일부를 시중에서 판매되는 형태와 유사하게 제작 후 파일로 제공하여 구매를 대체 할 수 있는 이용  
CD나 USB메모리 등 이동식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배포하거나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이용

#### > 저작물의 전체 복제

도서, 영상저작물의 일부분을 순차적으로 복제함으로써 누적 되어 결국 전체를 복제하게 되는 이용

#### > 저작권자의 이익 침해

위의 사례들로 인하여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시 교육의 목적이더라도 저작물의 이용이 허락되지 않음

## **[3] FAQ (자주 묻는 질문)**





Q

## 1. 원격 수업 중 지문, 사진, 동영상, 논문 등의 저작물 이용과 송출이 가능한가요?

- > 교육(강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 · 배포 · 공연 · 전시 · 송출(공중 송신) 허용**하고 있습니다.
- > 단, 수강을 신청한 학생들에게만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제한**을 통한 복제방지조치, 저작권 보호 경고 문구가 필요합니다.
- > 또한 저작물 이용 시 개별적 표기를 통해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Q

## 2. 학교의 학습관리시스템(LMS), 온라인 카페에 저작물을 게시해도 되나요?

- > 학교(교사)는 공표된 저작물 등의 **일부**를 학습관리시스템(LMS)은 물론 온라인 카페나 개인 블로그, SNS를 통해서도 제공(전송)이 가능합니다.
- > 단, 수강을 신청한 학생들에게만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제한**을 통한 복제방지조치, 저작권 보호 경고 문구가 필요합니다.
- > 또한 저작물 이용 시 개별적 표기를 통해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Q

## 3. 원격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논문/책을 스캔한 파일을 제공해도 되나요?

- > 학교(교사)는 수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텍스트 저작물은 10%)**을 복제하여 배포하거나 전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 단, 논문 또는 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스캔, 제공하거나 일부라도 이것이 누적되어 전부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해야 할 경우 교수와 학생이 저작물을 구매해 이용하거나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 조건과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Q

## 4. 구매한 상업용 음원, 영상저작물이라면 원격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전체를 제공해도 되나요?

- > 현행 저작권법은 학교 수업 목적이라도 저작물 이용은 기본적으로 전부가 아닌 **일부 이용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 적법하게 구매한 상업용 저작물이라도 음원 형태의 저작물은 20%(최대 5분 이내), 영상저작물은 20%(최대 15분 이내) 내에서 이용(전송)해야합니다.
- > 다만, **구매한 저작물을 복제하지 않고 강의실에서 재생하는 것은 비영리 목적의 공연(저작권법 제29조)에 해당되어 전체 재생이 가능**합니다. (전체 공유/배포는 불가)



Q

## 5. 기본 폰트가 아닌 인터넷에서 공유되는 무료 폰트를 이용하여 수업에 사용해도 될까요?

- > 무료 폰트는 대개 비영리 목적이면 이용을 허용하나 대상을 개인으로 한정해 교육활동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용조건을 확인바랍니다.
- > 문체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은 저작권 걱정 없이 누구나 이용 (문서작성, 인쇄, 공유, 배포)가능한 ‘**안심글꼴파일 모음집**’을 제공하고있으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안심글꼴파일 일누리집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저작권위원회	<a href="#">안심글꼴파일서비스</a> <a href="#">공공누리</a> <a href="#">공유마당</a>
----------------	--------------------------------	---



Q

## 6. 학생들의 과제물을 학교 수업이 아닌 외부 강의에 공개할 수 있나요?

- > 수업을 위해 필요하다면 학습자 간의 과제물 공유는 가능하지만, 외부에 공개를 하고자 한다면 **저작권자(학생)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 >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학생 본인이 직접 작성한 과제라면 학생의 동의만 받고 공개 가능하나,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개별 저작권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Q

## 7. 사진, 음원 등의 저작물을 학습자료(PPT 등)의 배경에 이용해도 되나요?

- > 수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 저작물을 이용 시에는 반드시 **사용 범위를 확인**하여 이용 조건에 맞게 이용해야 합니다.
- > 학습 내용과 관계없이 단지 집중을 높이기 위한 용도로 학습 자료에 음원이나 사진 등을 이용하는 것은 학교 **교육 목적상의 이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 따라서 배경으로 음원과 사진 등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저작권이 만료되거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공유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유 저작물 제공 사이트

(폰트, 아이콘, 효과음, 배경화면 등을 무료로 사용가능 할 뿐 아니라 인쇄, 공유, 배포도 허용)

- 공유마당 : <https://gongu.copyright.or.kr/>
- 셀바이뮤직 : <https://www.sellbuymusic.com/>
- 유튜브 오디오 : <https://www.youtube.com/audiolibrary/music?nv=1>
- 자멘도 : <https://www.jamendo.com>
- 프리뮤직아카이브 : <https://freemusicarchive.org/static>
- 프리사운드 : <http://freesound.org>
- 씨씨믹스터 : <http://ccmixter.org/>
- 플래티콘 : <https://www.flaticon.com>
- 픽사베이 : <https://pixabay.com/ko>